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. 10. 10 선고 2019가합102887 판결 [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A유한공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준, 정희림, 하상혁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0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,000,065,753원과 그중 1,00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1. 6.부터 2019. 5. 29.까지는 연 6%의, 2019. 5. 30.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,000,065,753원과 그중 1,00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1. 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일부 기각 부분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)에 의하면,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%로 정하면서,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'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. 5. 31.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, 2019. 6. 1.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.'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9. 6. 1. 이후부터 연 12%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재판장판사서정현

판사노용준

판사박나라

별지